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정책복지위원회**

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심기보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6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0년 7월 2일

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성·투명성·효율성 향상 및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중복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하고,
-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를 행정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3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다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- 마.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바. 위원회의 활동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### 가. 제출배경

-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자문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, 적용범위, 위원회의 설치요건·설치절차, 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음.
- 충북도 「'20.1분기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보고(6.8)」에 따르면, 소속 각종 위원회는 156개\*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105개(67%),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51개(33%)로 구성·운영되고 있으며, 해마다 위원회는 증가추세\*\*에 있음.
  - \* 성격별 : 심의 123개(79%), 자문 30개(19%), 복합(3%)
  - \*\* ('17년)124개 → ('18년)134개 → ('19년)149개 → ('20년 1분기)156개
- 총 위원수는 3,004명(당연직 632, 위촉직 2,372명)이며 위촉직 여성위원비율\*은 39.0%,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 위원은 136명으로 조사됨.
  - \* 여성 위촉위원 총 수 / 위촉위원 수
- 위원회 개최 실적은 128회('20.1분기)이며 대면회의 65회, 서면회의 69회 임
- 현재 충북도에는 위원회 설치의 기본 원칙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어 위원회 운영, 위원 제척·기피, 위원 해촉 등 설치·운영기준을 각 조례별로 규정하고 있음.
-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설치·운영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매년 증가하는 위원회와 위원 중복 위촉, 여성참여비율 저조 등 현행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설치·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.
- 이에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, 구성, 운영, 위원 제척·기피, 해촉 등에 대한 통합기준과 운영평가와 자체정비계획을 통하여 위원회를

통합·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·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유사·중복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.

《 타 시·도 조례 운영현황 》

연번	시·도	조례명	제정일
1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2011. 9.29
2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2019. 1. 7
3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	2006. 4.10
4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	1999. 3. 2
5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7.12.29
6	세종특별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	2012. 7. 2
7	경기도	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2. 5.11
8	강원도	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2007. 5. 4
9	충청남도	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3. 2.20
10	전라북도	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5. 5. 1
11	전라남도	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	2013. 6.13
12	경상북도	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	2018.11. 1
13	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2012. 7.18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위원회”, “담당부서”, “총괄부서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.
  -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,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함.
  -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(정책기획관)를 말함.
- 안 제3조는 위원회가 행정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 제고에 기여 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. 또한,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 확보와 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위원회 기본원칙을 규정함.

- 안 제6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 관계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함
  - 위원회 설치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와 유사·중복위원회 구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7조는 설치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토록 함.
  -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을 통하여 신설 위원회의 구성근거,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함.
-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시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,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함. 또한, 한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함.
  -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맞는 위원 위촉을 위해 사전 위원후보자 인적 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고,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.
  -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,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됨.
-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하며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 -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서면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12조는 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·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등은 도의회나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토록 규정함.
  -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공개 원칙과 회의 토론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회의 전 공지해야 할 것임.
-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6조는 도지사는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반영하여 위원회 설치 및 폐지, 통·폐합 등 정비, 존속기간 연장, 운영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 

또, 안 제17조는 위원회의 통합·폐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설립목적 달성하거나, 기능 상실 및 설치근거 소멸된 경우,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,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존속기한이 경과한 위원회는 통합·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  - 집행부의 위원회 운영평가 및 자체정비계획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통합·폐지에 대한 근거 마련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.
- 안 제18조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7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현재, 충북도에는 15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위원회의 개선사항이 돌출되고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어, 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 등에 대한 통합된 규정과 위원회 정비 근거 마련이 필요성이 인정되어,

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